하나고등학교 내 학생 인권 침해 사례 개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0조, 제12조에 대한 고찰

권동한¹⁰, 한지민¹ ¹하나고등학교 ryankwon@ieee.org, has_22204@hana.hs.kr

I. 서론 - 정치 참여 유형과 사안의 선택 이유

정치란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1]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제25조, 제72조 및 제130조 제2항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장되는 참정권은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라 정의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당연하게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이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본교 역시 하나의 사회이며 학교 내에서 학생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교 측에 전달하여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맞추어 변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보고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정치 암여 유형은 교내의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을 학교 측에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최근 본교 내의 창의인성부에서 관할하는 동아리 단체복 승인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고, 이러한 사안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의거하여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2]에 착안하여 위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II. 사안 분석

하나고등학교의 동아리에서는 동아리 내 동아리 단체복 (동아리티, 동티 등으로 불림)를 맞춤 제작할 수 있다. 2022년에는 각 동아리별 두 벌의 단체복을 승인되었고 1년간 학생들이 교내에서 착용한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3월 31일 하나고등학교 내부 인트라넷을 통하여 동아리 단체복 개수 제한은 개인에게 귀속되며, 창체 동아리 1벌, 자율동아리 1벌 총 2벌로 엄격히 제한된다는 사실이 공지되었다.

본 팀에서 조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1년에는 동아리별 각각 2벌씩 가능하다는 점이 공지에 명시되어있었고, 2022년 공지에 따르면 1년에 2벌만 승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었으나 동아리별인지, 개인별인지 나타나 있지 않았으며 동아리당 단체복 역시 두 벌로 승인해준 바 있다. 2023년 첫 동아리 복장 관련 공지가 올라온 것은 3월 31일, 즉 동아리가 조직되고 첫 모임이 있었던 3월 22일 이후로부터 9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본교의 학업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다수의 동아리가 작년, 재작년의 규정을 토대로 동아리 단체복을 이미 제작하고 주문을 의뢰한 상태였다. 해당 시점 이미 단체복이 도착한 동아리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불한 상태에서 단체복의 수를 제한한다는 공지를 올린 것이다. 심지어 학교 측에서는 동아리 단체복으로 구매하였으나 개수 제한으로 입지 못하는 옷, 일명 사복이 되어버린 단체복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학생들의 개성 실현 권리를 밝히고, 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말한다[2]. 자유롭게 옷을 착용하고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학생들은 일과 시간에 정해진 교칙에 따라 의복을 착용한다. 예의, 소속감, 정갈함 등이 필요한 일과 시간이 끝난 후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주로 동아리 단체복뿐이다. 이 역시 소속감과 더불어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는 적합하지 않고, 불구하고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숙형 고등학교인 본교 특성상 의무 야간 자습인 '면학'이 2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학교에서 밝히는 공식일정으로는 24시 30분 (익일 00시 30분) 취침, 06시 40분 기상으로 약 6시간 취침이 가능하나 이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으며, 본교 특성상 실질적으로 익일 01시 30분 이후에 취침하는 학생이 다수임은 자명하다.

본교 일과는 야간 면학 1타임 - 19시 00분 ~ 21시 00분, 야간 면학 2타임 - 21시 30분 ~ 23시 30분으로 운영되며 평일은 야간 면학 2타임까지 의무 자습이 진행된다. 주말에는 선택적으로 야간 2타임 생활관 입실이 가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평일 또한 야간 2타임 선택적 생활관 입실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기존에 교장 간담회에 제안되었으나 학습 역량 저하를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0조(휴식권)는 제1항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2]. 본교의 일과 운영 방침은 '충분한 휴식시간의 확보'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교장간담회에서 학습 역량 저하를 이유로 일괄적으로 학생의견을 반려한 것 또한 제10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Ⅲ. 구체적 참여 과정

하나고등학교 13기 전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평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교칙에 의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에 대한 공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 동티 승인 가능 수를 늘려주세요..
- 2타임 생활관.. 가능할까요..
- 학교 공식 일과가 끝난 후 복장규정 풀기/면학시간 생활관 입실 신청제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부당한 체육복 및 동티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동티 불소급의 원칙

동티.....





MASKS SAIS

2023/04/03 5:42 PM

학교 공식 일과가 끝난 후 복장규정 풀기/면학시간 생활 관 입실 신청제



HA040 0188

2023/04/03 5:53 PM

체육복 착용하고 등교 금지.



MARKED SOME

2023/04/03 6:04 PM

동티...

위 의견은 "동아리 단체복 규정 개정" 및 "생활관 2타임 입실"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본 팀은 위의 장에서 사안을 분석한 바 있다.

동아리 단체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학생들이 당시 공지된 단체복 규정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간식 시간 30분 동안 동의 서명서를 식당 앞에 놔두었다. 약 150명 이상의 동의 서명이 작성되었으며, 간식을 먹지 않는 학생들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주제가 뜨거운 감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설문을 받음과 동시에 학생들의 반발이 발생하기 전의 규정, 즉 2021년의 동아리 단체복 규정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어 성명문을 작성했다. 성명문에는 단체복 합산 계산 시 조직별 별도 합산, 연도별 별도 합산 원칙을 따랐던 과거의 단체복 규정을 서술하며 '조직(각 동아리 및 학급)당 2벌, 각 기수별 승인'이라는 규정 개선안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13기 권동한, 한지민입니다.

과거 아래와 같이 단체복 합산 계산시 조직별 별도 합산, 연도별 별도 합산 원칙을 따랐지만, 동아리복 제작 이후 뒤늦게(동아리 조직 후 일주일 이상) "동아리복은 개인당 1년에 딱 2벌씩 맞출 수 있습니다. (창체 1벌, 자율 1벌)" 라고 공지하여 각 동아리 조직에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이미 2023학년도 단체복을 주문하거나 (또는 할 예정에 있거나) 2022학년도 단체복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단체복일지라도 입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학년, 3학년 공통)

이에 아래*〈조직(각 동아리 및 학급)당 2벌, 각 기수별 승인〉*와 같이 개선안을 제시하오니 결정에 고려하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04.03.

권동한, 한지민 드림.

성명문과 규정 개정 동의 서명을 담당 부서인 창의인성부에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서명을 진행하고 오래 지나지 않은 시일인 4월 5일에 학부모 대표위원과 간담회가 열리고, 동아리 단체복 관련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학부모 대표위원님께 성명서와 동의 서명서 파일을 전송하여 학생들의 대체적인 태도, 인식 현황을 전달하였으며 구체적인 개선안 역시 전달하여 개선 방향성도 제시하였다. 간담회 당일 단체복 규정이 조직 당 한 벌 승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틀 뒤에는 제시한 개선안대로 조직 당 두 벌 승인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평일 면학2타임 생활관 출입 제도화는 학교의 일과를 개정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서의 참여를 고려하였으나 기존 교장간담회에서 반려된 내용이며 또한 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본교 측에 직접적인 협조를 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향을 택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3]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전담 기구이다. 위원회로서 강제성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진 않지만, 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하는 해당 개선안에 대하여 본교측에 권고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고, 이에 위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였다.

인권위 '인권e' 누리집을 통하여 "기숙형 고등학교 내 휴식권 증진"진정을 접수하였으며, 23-진정-0287300으로 처리중에 있다. 현재 인권상담조정센터 박*현 담당자를 통하여 진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본 활동의 일정상의 제약으로 해결까지의 내용은 포함할 수 없었다.

비공개

접수일자: 2023.04.10

인권위 진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숙형 고등학교인 본교 특성상 면학(의무 야간 자습)이 23시 30분까지 진행됨.

공식 일정으로는 24시(익일 00시) 30분 취침~06시 40분 기상으로 약 6시간 취침이 가능하나 이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으며, 본교 특성상 실질적으로 (익일) 01시 30분 이후에 취침하는 학생이 많음.

본교 일과는 [야간 면학 1타임] 19시 00분~21시 00분, [야간 면학 2타임] 21시 30분~23시 30분으로 운영되며 평일은 야간 면학 2타임까지 의무 자습 진행됨. 주말에는 선택적으로 야간 2타임 생활관(기숙사) 입실이 가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평일 또한 야간 2타임 선택적 생활관 입실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기존에 교장 간담회에 제안되었으나 학습 역량 저하를 이유로 반려된 바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0조(휴식권)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본교 평일 생활관 2타임 선택적 입실 제도화에 대한 진정을 제기함. (상시 운영이 아니더라도, 신청제를 통하여 일주일 중 최대 입실 가능 일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라도 운영되길 바람)

- * 가능한 진정인의 신원을 익명으로 유지해주십시오.
- * 유선상 연락을 받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 확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이메일을 통하여 연락해주십시오.

위와 같은 참여를 통해. 본 팀은 학생인권조례 제3조 "(중략)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제10조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등을 본교 내에서 수호하고자 하였다.

IV. 참여 의의

일정 기간 교내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동아리 단체복 규정 개선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교내측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으며, 첫 이슈만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유의미한 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는 면학 2타임 생활관 출입 제도화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이상적인 정치 참여라고 생각한다. 참여 과정 속에서 일부 학생은 해당 정치 참여에 대한 반발을 표출하기도 하였으며, 의구심을 품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정치를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긍정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반응, 피드백 역시 모두 학생들의 의견이다. 이들의 의견 역시 참고하여 설문 방식, 개선안 등을 수정하여 보완된 정치 참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본 팀은 생각한다.

V. 요약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0조, 제12조를 기반으로 하나고등학교 내 '동아리 단체복 개수 제한 규정 개정' 및 '생활관 면학 2타임 입실 제도화' 문제 등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고찰하고 실천함. 학생 서명운동을 전개, 학부모 대표위원께 성명서와 동의 서명서 파일을 통해 대체적인 태도, 인식 현황,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숙형 고등학교 내 휴식권 증진"을 위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에 있음. 위 활동을 통해 진정한 정치 참여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계기 있었음.

- [1] 국립국어원. "정치." 표준국어대사전, 2023, <u>2023-04-11 접속</u>
- [2]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2021.
-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법." 2022.

[별도1] 역할분담표

22017 권동한	22204 한지민
 전체 보고서 중 "휴식권 증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담당. "기숙형 고등학교 내 휴식권 증진" 인권위 진정 제기 행정 절차 진행 및 진정문 작성을 담당. 	 전체 보고서 중 "단체복 규정" 부분을 중점적으로 담당. 학부모 대표위원님께 성명서를 전달하고 소통하며 하나고등학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함.
공통	
"도시기 다케브 게스 게칭 그가 게거"이 이렇 사고의 취하는 그 거기된 상 지면이도의 거게된 그 서면 사로 가서하	

- "동아리 단체복 개수 제한 규정 개정"을 위한 안건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성명서를 작성함.